

**의류와 의류 액세서리 제품의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장관령 2021년 제142호
(No.142/PMK.010/2021)**

제정일: 2021년 10월 22일
시행일: 2021년 11월 12일

[고려사항]

- a. 반덤핑조치, 상계조치 및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34호 제70조에 의거하여 수입품에 대해 수입관세 외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b. 인도네시아 무역안전위원회¹⁾ 최종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의류와 의류용 액세서리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이 확인됨.
- c. 상기 a호와 b호의 고려사항을 근거로 관세법 1995년 제10호 법률과 그 개정 법률인 2006년 제17호 법률의 제23D조 제(2)항의 규칙을 시행하기 위해 의류와 의류 액세서리 제품의 수입에 대해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에 관한 재무장관령을 정할 필요가 있음.

[관계법령] 번역생략

제1조

의류와 의류 액세서리 제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한다.

No	HS Code	세이프가드 수입관세 규모 (루피아/piece)		
		1년차	2년차	3년차
1	6101.20.00	63,000	59,850	56,858
2	6101.30.00	63,000	59,850	56,858
3	6101.90.00	63,000	59,850	56,858
4	6101.20.00	63,000	59,850	56,858
5	6102.30.00	63,000	59,850	56,858
6	6102.90.00	63,000	59,850	56,858

1) Komite Pengamanan Perdagangan Indonesia

7	6103.10.00	59,400	56,430	53,609
8	6103.22.00	59,400	56,430	53,609
9	6103.23.00	59,400	56,430	53,609
10	6103.29.00	59,400	56,430	53,609
11	6103.32.00	63,000	59,850	56,858
12	6103.33.00	63,000	59,850	56,858
13	6103.39.90	63,000	59,850	56,858
14	6103.42.00	58,500	55,575	52,796
15	6103.43.00	58,500	55,575	52,796
16	6103.49.00	58,500	55,575	52,796
17	6104.13.00	59,400	56,430	53,609
18	6104.19.20	59,400	56,430	53,609
19	6104.19.90	59,400	56,430	53,609
20	6104.22.00	59,400	56,430	53,609
21	6104.23.00	59,400	56,430	53,609
22	6104.29.00	59,400	56,430	53,609
23	6104.32.00	63,000	59,850	56,858
24	6104.33.00	63,000	59,850	56,858
25	6104.39.00	63,000	59,850	56,858
26	6104.43.00	59,400	56,430	53,609
27	6104.44.00	59,400	56,430	53,609
28	6104.49.00	59,400	56,430	53,609
29	6104.52.00	58,500	55,575	52,796
30	6104.53.00	58,500	55,575	52,796
31	6104.59.00	58,500	55,575	52,796
32	6104.62.00	58,500	55,575	52,796
33	6104.63.00	58,500	55,575	52,796
34	6104.69.00	58,500	55,575	52,796
35	6105.10.00	36,360	34,542	32,815
36	6105.20.10	36,360	34,542	32,815
37	6105.20.20	36,360	34,542	32,815
38	6105.90.00	36,360	34,542	32,815
39	6106.10.00	36,360	34,542	32,815
40	6106.20.00	36,360	34,542	32,815
41	6106.90.00	36,360	34,542	32,815
42	6109.10.10	27,900	26,505	25,180

43	6109.10.20	27,900	26,505	25,180
44	6109.90.20	27,900	26,505	25,180
45	6109.90.30	27,900	26,505	25,180
46	6110.20.00	63,000	59,850	56,858
47	6110.30.00	63,000	59,850	56,858
48	6110.90.00	63,000	59,850	56,858
49	6110.20.00	19,260	18,297	17,382
50	6110.30.00	19,260	18,297	17,382
51	6111.90.90	19,260	18,297	17,382
52	6117.10.10	19,800	18,810	17,870
53	6117.10.90	19,800	18,810	17,870
54	6201.12.00	63,000	59,850	56,858
55	6201.13.00	63,000	59,850	56,858
56	6201.19.20	63,000	59,850	56,858
57	6201.19.90	63,000	59,850	56,858
58	6201.92.00	63,000	59,850	56,858
59	6201.93.00	63,000	59,850	56,858
60	6201.99.20	63,000	59,850	56,858
61	6201.99.90	63,000	59,850	56,858
62	6202.12.00	63,000	59,850	56,858
63	6202.13.00	63,000	59,850	56,858
64	6202.19.20	63,000	59,850	56,858
65	6202.19.90	63,000	59,850	56,858
66	6202.92.00	63,000	59,850	56,858
67	6202.93.00	63,000	59,850	56,858
68	6202.99.20	63,000	59,850	56,858
69	6202.99.90	63,000	59,850	56,858
70	6203.12.00	59,400	56,430	53,609
71	6203.19.11	59,400	56,430	53,609
72	6203.19.19	59,400	56,430	53,609
73	6203.19.90	59,400	56,430	53,609
74	6203.22.10	59,400	56,430	53,609
75	6203.22.90	59,400	56,430	53,609
76	6203.23.00	59,400	56,430	53,609
77	6203.29.90	59,400	56,430	53,609
78	6203.32.10	63,000	59,850	56,858
79	6203.32.90	63,000	59,850	56,858

80	6203.33.00	63,000	59,850	56,858
81	6203.39.00	63,000	59,850	56,858
82	6203.42.10	58,500	55,575	52,796
83	6203.42.90	58,500	55,575	52,796
84	6203.43.00	58,500	55,575	52,796
85	6203.49.90	58,500	55,575	52,796
86	6204.12.10	59,400	56,430	53,609
87	6204.12.90	59,400	56,430	53,609
88	6204.13.00	59,400	56,430	53,609
89	6204.19.90	59,400	56,430	53,609
90	6204.22.10	59,400	56,430	53,609
91	6204.22.90	59,400	56,430	53,609
92	6204.23.00	59,400	56,430	53,609
93	6204.29.90	59,400	56,430	53,609
94	6204.32.10	63,000	59,850	56,858
95	6204.32.90	63,000	59,850	56,858
96	6204.33.00	63,000	59,850	56,858
97	6204.39.90	63,000	59,850	56,858
98	6204.42.10	59,400	56,430	53,609
99	6204.42.90	59,400	56,430	53,609
100	6204.43.00	59,400	56,430	53,609
101	6204.44.00	59,400	56,430	53,609
102	6204.49.10	59,400	56,430	53,609
103	6204.49.90	59,400	56,430	53,609
104	6204.52.10	58,500	55,575	52,796
105	6204.52.90	58,500	55,575	52,796
106	6204.53.00	58,500	55,575	52,796
107	6204.59.10	58,500	55,575	52,796
108	6204.59.90	58,500	55,575	52,796
109	6204.62.00	58,500	55,575	52,796
110	6204.63.00	58,500	55,575	52,796
111	6204.69.00	58,500	55,575	52,796
112	6205.20.10	36,360	34,542	32,815
113	6205.20.90	36,360	34,542	32,815
114	6205.30.90	36,360	34,542	32,815
115	6205.90.91	36,360	34,542	32,815
116	6205.90.99	36,360	34,542	32,815

117	6206.30.10	36,360	34,542	32,815
118	6206.30.90	36,360	34,542	32,815
119	6206.40.00	36,360	34,542	32,815
120	6206.90.00	36,360	34,542	32,815
121	6209.20.30	19,260	18,297	17,382
122	6209.20.40	19,260	18,297	17,382
123	6209.20.90	19,260	18,297	17,382
124	6209.30.10	19,260	18,297	17,382
125	6209.30.30	19,260	18,297	17,382
126	6209.30.40	19,260	18,297	17,382
127	6209.30.90	19,260	18,297	17,382
128	6209.90.00	19,260	18,297	17,382
129	6214.30.10	19,800	18,810	17,870
130	6214.30.90	19,800	18,810	17,870
131	6214.40.10	19,800	18,810	17,870
132	6214.40.90	19,800	18,810	17,870
133	6214.90.10	19,800	18,810	17,870
134	6214.90.90	19,800	18,810	17,870

제2조

제1조의 세이프가드 관세는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부과되며 세부 품목이 헤드웨어(headwear)와 넥웨어(neckwear)인 의류와 의류 액세서리 제품으로서 아래 HS Code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된다. 본 장관령의 첨부에 명시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한다.

- a. 6117.10.10
- b. 6117.10.90
- c. 6214.30.10
- d. 6214.30.90
- e. 6214.40.10
- f. 6214.40.90
- g. 6214.90.10 및
- h. 6214.90.90

제3조

- (1) 제1조의 세이프가드 관세의 부과란 아래와 같다.
 - a. 일반관세 추가(최혜국/Most Favoured Nation) 또는
 - b. 특혜관세 추가. 유효한 국제물품매매협약을 근거로 물품이 국제물품매매협약 범위에 포함되는 국가로부터 수입이 되고 국제물품매매협약 범위 규정을 충족시키는 경우
- (2) 국제물품매매협약 규정을 충족하지 않거나 현재 소급확인(Retroactive Check) 요청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 상기 제(1)항 b호의 국제물품매매협약 범위에 포함되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는 일반관세 추가에 해당한다.

제4조

- (1) 제2조의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에서 생산된 의류와 의류 액세서리 제품을 수입시 수입업자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2) 제(1)항의 원산지증명서가 특혜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국제협약 또는 합의에 근거하여 수입품에 대한 수입관세율 부과를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검사한다. 검사는 원산지증명서 검사에 관한 재무장관령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3) 제(1)항의 원산지증명서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검사는 무역부 장관이 정한 규정을 근거로 한다.

제5조

- (1) 제1조의 세이프가드 관세 규모는 아래와 같이 통관되는 의류와 의류 액세서리 제품에 대해 완전히 유효하다.
 - a. 세관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통관의무를 마치는 경우, 수입세관신고서가 제출된 후 세관으로부터 등록번호를 부여받음.
 - b. 세관신고서 없이 통관의무를 마치는 경우, 통관지역의 세관이 관세액과 요율을 정함.
- (2) 자유무역지대 및 자유항, 보세지역 또는 특별경제구역으로 물품을 반입 및/또는 반출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제6조

본 장관령은 제정된 날로부터 21(이십일)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본 장관령을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에 게재할

것을 명한다.

자카르타에서 승인됨.

2021년 10월 21일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장관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자카르타에서 제정됨.

2021년 10월 22일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21년 제1186호

[첨부] 세부품목이 헤드웨어(headwear)와 넥웨어(neckwear)인 의류와 의류 액세서리 제품에 한해 세이프가드 관세가 면제되는 국가명 목록(영문, 원문참조)